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정관

제정 2016. 6. 20.

개정 2016.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며, 부산광역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산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12.26.>
6. 문화예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12.26.>
7. 문화예술 공연 사업 및 행사의 개최 <신설 2016.12.26.>
8.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신설 2016.12.26.>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등

제6조(임원의 종류 등) ①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대표이사는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2.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시의 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③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 담당과장과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1인이 된다.
- ④ 당연직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은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권자는 연임의 경우 추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제9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
 3. 법인이 추천하는 2명
-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법인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며 시와 법인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⑦ 추천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⑧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6.>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 <신설 2016.12.26.>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신설 2016.12.26.>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신설 2016.12.26.>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신설 2016.12.26.>

제11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2조(설치 등)

-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6.>
11.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내로 소집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제15조(의결방법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 중에서 의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고, 그 직무대행자는 당해 이사회에 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이사는 대리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등

제1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등

제19조(조직 등)

- ①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인의 실제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협의

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의 임면)

- ① 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의 겸직제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 ①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 규정에 의한다.
-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을 제외 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회 등의 설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등의 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설립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3. 출연금 및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재원)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원칙 등)

- ①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32조(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2. 당해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6.12.26.>

제33조(손익금의 처리)

- ①법인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②법인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 ③법인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된다.

제36조(준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직제, 정원, 보수 등 중요한 규정을 개폐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6. 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의 최초 대표이사와 임원은 제7조, 제9조,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천받은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3명으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최초의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단수추천도 가능하다.
- ③ 법인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제10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집행하며, 이 경우 집행은 시 회계절차 등을 준용하여 시 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집행하며,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기 계약된 사항에 대한 지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목록]

재 산 목 록					
총 계	금일십억원(₩1,000,000,000)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m ²)	평가액(원)	출연자
		건 물		-	
		대 지		-	
		출연금		1,000,000,000	부산광역시
		소 계		1,000,000,000	
2. 보통재산	품 목	대 수	종 류	금 액	비 고
	-		-		
	-				
	소 계		-	-	